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23. 4. 10

제1조 (목적)

이 기준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 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,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“관련법규”라고 한다)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.

①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나. 성과 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

다. 판매회사 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라. 신탁업자 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을 대신 해준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②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,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시 일정한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

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①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제6조 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

제7조 (투자광고)

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, 판매회사가 받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조 (공시 등)

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

② 회사는 법 제 58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